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1. 10 선고 2022가단898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주식회사 A

2. 주식회사 B

3. 주식회사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

담당변호사 이창근, 이지호, 정연우, 박성은

피고D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, 모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11. 10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21. 체결한 증여계약을 312,473,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2,473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철

별지